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4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 박수영·안철수·곽규택

서일준 · 정성국 · 김상훈

배현진 · 김기현 · 김대식

강승규 • 권성동 • 조지연

정희용 · 김승수 · 김용태

박형수 • 조승화 • 서천호

이종배 의원(19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연관 산업 파급효과로 성장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여 경제 전반의 고도화에 기여해왔음.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 지원은세제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로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음.

주요 경쟁국은 보조금, 세제 혜택, 인프라, 인력 육성, 자국 기업과의 협력 지원 등을 다방면에서 총력 지원 중이며,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은 직접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중복 지원해 투자 대비 실질 정부지원율이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은 실질 지원율이세액 공제율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한국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이 주요 국가에 비해 낮고, 이마저도 일몰되거나 될 예정으로 실효성이 제한적임.

현재 국가전략기술산업은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기업이 혼자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으며,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투자 기간과 수익 확보까지의 시차가 커 국가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의 일몰 및 이월기간 등을 연장하고, R&D 설비투자도 시설투자로 간주하며, 관련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현행 대비 각각 10%씩 상향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과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21년 하반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3.6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기간이 만료되어 '24년 말 일몰 예정임.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대규모 설비·시설 투자가 필수적이며, 투자결정부터 양산까지 최소 3~4년 이상 소요됨을 고려하여, 기업이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34년까지 향후 10년간 일몰을 연장해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세액공제를 지원하고자 함.

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21년 하반기부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도입되었으나,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경쟁국 대비 짧은 이월기간(10년)은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큼. 이에 당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도입한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경쟁력 수준(미국 20년)으로 이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15%로 CHIPS and Science Act 시행을 통해 반도체 및 첨단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 25%를 적용 중인 미국보다 낮음. 한국 기업 등의 경쟁력약화가 우려되며, 특히 국내 투자 대신 미국 내 투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5%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40%로 각각 10% 상향하고자 함.
- 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도 국가전략기술시설로 간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설비 투자는 첨단기술을 위해 필수적인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간주하지 않아 기본공제율(1%)이 적용되어 왔음. 연구개발 시설도 생산시설과 동일 수준의 고사양 설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시설투자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 마.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일몰 연장)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

제(최근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가 12년 만에 부활했지만, 경기 부진 탓에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23년 한 해만 시행되고 일몰됨. 이에 기업 투자 확대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26년까지 향후 3년간 일몰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 월 31일까지"를 "제1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2호는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1)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2) 중 "사업화"를 "연구개발 및 사업화"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시설"로, "2024년 12월 31 일"을 "2034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100분 의 25"를 "100분의 35"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025 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목 2) 중 "국가전략기 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전략기

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시설"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10년"을 "10년(제10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은 2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국가전략기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월 된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제1호는 2024년 12월 31일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 까지, 제2호는 2034년 12월 31 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일까지-----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 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 나만을 적용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 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 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 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 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 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 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 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 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 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 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 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 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

-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경우: 100분의 40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30

나. (생 략)

3. (생략)

② ~ ⑥ (생 략)

가
1)
<u>100분의 50</u>
2)100분의
<u>40</u>
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 1. (생략)
-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u>2023</u>
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
일, 2025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
1. (현행과 같음)
2
가
,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u>사업화</u>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u>국가전략기술</u>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 자하는 경우: 100분의 15 (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 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한도로 한다.
-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1) (현행과 같음) 2) <u>연구개</u> <u>발 및 사업화</u>
국가전략기술시설
<u>2034년 12월 31일</u> -
<u>100분</u>
<u>의 25</u> <u>100분의</u>
<u>35</u>
나
국가전략기술시설
,
<u>.</u>
3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 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 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 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 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 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	- <u>2023년 1</u>
2월 31일, 2024년	12월 31
일, 2025년 12월	31일, 202
<u>6년 12월 31일</u>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전략기술	시설
나	-2023년 1
2월 31일, 2024년	
일, 2025년 12월	_
<u>6</u> 년 12월 31일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한도로 한다.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u>국</u> 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4,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104조의1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

	25	~ ④ (현행과 같음)
		<u>국</u>
	<u>가전</u> 	<u>략기술시설</u>
제		 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	

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 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 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 칙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 12조의4(종전 제37조의 개정규 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 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 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 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 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 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 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0년(제10조 및 제24 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은 20 뚸)-----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